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0. 20.(수) 10:00

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42호
- 나. 제 출 자 : 강수정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10. 8.
- 라. 회부일자 : 2021. 10. 8.

2. 제안이유

금천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 나. 적용범위(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 라.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 마.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 바. 예산지원(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8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10. 8. ~ 10. 13.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

나. 주요 내용

1)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제3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종료 아동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퇴소 청소년 등’ 으로 하여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

2) 적용범위(안 제4조)

-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우선 적용대상과 다음 후순위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분리하여 규정함.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우리 구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타 지자체에 소재한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지급의 제한사항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3) 지원사업 (안 제5조)

-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제42조에서 보호종료 및 퇴소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퇴소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자립지원센터 설치(안 제7조)

- 복지시설 퇴소자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예산지원(안 제8조)

- 안 제5조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주거가 불안정하고 질이 낮고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취업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연령의 상향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등 실제 효과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정부 건의와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제정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시설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혜명보육원	1명	-	1명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2명	13명	8명

○ 아동양육시설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신고일	전화번호	현원 (정원)
아동양육시설	혜명보육원	탑골로35	박혜정	1946.1.26.	802-0358	54 (57)
청소년시설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독산로73길 10-16	조하나로	2014. 3.1.	6959-1011	2 (8)

퇴소자 현황(단위 : 명)

○ 아동 현황

구분	2022년 (예상)	2021. 9월 말	2020년	2019년
퇴소아동	14	11	6	5
퇴소청소년	3	5	8	13

자립지원 현황

○ 아동 현황

자립수당	월30만원 (보호종료 후 3년간)	자립정착금	500만원(보호종료 후 1회)
대학등록금	300만원(대학입학시 1회)	임대주택	LH 전세임대

○ 청소년 현황

자립수당	월30만원(쉼터 퇴소 후 3년 이내)	임대주택	LH 전세임대
------	----------------------	------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8. 3. 6.>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643호, 2020. 7. 16., 제정]

제6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